

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세칙

[개정: 2023.3.1.]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백석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「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 제2장 및 제3장에 의거하여 대학원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과 관련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응시자격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 자격은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외국어시험: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1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
2. 종합시험: 석사과정 12학점 이상, 박사과정 24학점 이상(신학[Ph.D.]전공은 12학점), 석박사통합과정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. 다만, 일반대학원, 기독교전문대학원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

제3조(외국어시험의 대체·면제) ① 해당 대학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관련 과목 또는 한국어 관련 과목(외국어트랙의 경우)을 이수한 자나 공인된 외국어시험 점수가 본 대학원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②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

③ 학위과정 변경 시 기준에 합격한 외국어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.

제4조(종합시험의 인정) 본 대학 대학원 진학 및 학위과정 변경 시,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시험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.

1. 본 대학 대학원 수료자 또는 졸업자가 동일 대학원의 유사전공에 진학 시, 기준에 합격한 종합시험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. 단, 석사과정에서 박사(석박사통합) 과정으로 진학 시에는 공통(기독교세계관)과목을 제외한 종합시험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.

2. 학위과정 변경 시 기준에 합격한 종합시험 과목 중 공통(기독교세계관)과목만 인정한다.

제5조(응시 절차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응시료를 납부해야 한다. 이 때 응시료는 [별표1]과 같다. 단, 외국어트랙의 응시료는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시험일자) 매 학기 중에 시행하되 시험실시 2주일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대학원의 형편에 의해 시험 공고일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시험과목) 본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① 외국어시험: 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 또는 한국어(외국어트랙의 경우)로 한다. 다만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외국어를 시험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종합시험: 종합시험의 과목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대학원장의 요구에 의해 과목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일반대학원: 석사 2과목

2. 기독교전문대학원: 석사 2과목, 박사 3과목(Th.D. in Min. 2과목), 석박사통합과정 3과목 이상으로 하며, 공통과목 1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.

3. 신학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: 석사 2과목

제8조(출제위원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해당 대학원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출제범위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어시험: 각 전공 분야의 적절한 연구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2. 종합시험: 전공영역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
제10조(채점위원) 채점위원은 그 해당 과목의 출제위원이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원장의 허락을 얻어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1조(배점 및 합격기준) ①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,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

② 종합시험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,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제12조(결과보고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채점위원은 그 결과를 시험시행일 2주 이내에 대학원교학처에 제출해야 하며, 대학원교학처는 이를 취합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재응시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험경비)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출제 및 채점, 감독비 등은 [별표1], [별표2]와 같이 책정하여 지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응시료

1.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응시료

(단위: 원)

구분	대학원	과정	응시료 (과목당)	비고
외국어시험	일반·기독교전문	석사, 박사, 석박사통합	15,000	
종합시험	전 대학원			

[별표2]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경비 지급액

1.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경비 지급액

(단위: 원)

구분	대학원	과정	출제비 (과목당)	채점비	비고
외국어시험	일반· 기독교전문	석사, 박사, 석박사통합	15,000	(0~2명) 15,000 (3명~) n명×6,000	감독비 30,000원 (50분당) ※ 종합시험 감독관은 교통비 20,000원을 추가 지급
종합시험	전 대학원				